

영한/한영 전문 특허 번역 교육의 필요성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의
특허 수업을 중심으로 —

최 효 은
(이화여대)

1. 서론

기술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자국의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 출원 및 이와 관련한 국제 분쟁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건수는 2008년 7,913건에서 2009년 8,026건으로 늘어났으며,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특허분쟁의 경우 2004년 44건에서 2009년 141건으로 증가했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4).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세계화 흐름은 금융시장의 개방, 법률의 국제화 등과

함께 법률분야의 전문 번역사 수요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신지선 2009: 64).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해외 출원을 위한 명세서 및 관련 자료나 특허 분쟁시 요구되는 선행기술 등 관련 문서를 번역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실제로 해외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잘못 번역된 특허명세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4). 또한 청구범위가 좁게 번역되어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거나 선행문건의 오역이 특허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글로벌 제약업체 바래버러터리스와 일본 미쓰비시 케미컬의 특허분쟁에서 바래버러터리스는 제시한 선행조사 자료가 특허권을 보유한 미쓰비시의 번역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돼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침해 판결을 받았다(전자신문 2014년 5월 13일자)¹⁾.

지식재산의 번역은 목표언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지식, 그리고 기술에 대한 고도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5). 이와 관련해서 전자신문²⁾은 지식재산 번역을 특허 법률 지식과 기술적 배경 지식, 어휘 능력 등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는 서비스라 명시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 번역은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우수한 전문번역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필요를 인식한 특허청이 관련 산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번역 가이드라인』(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을 출간하고 지식재산번역능력 시험을 시행(특허청 2011a)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와 학계의 노력은 여전히 미비하다. 해외에서는 특허 장르 연구(Arinas Pellón 2010, 2012; Arinas Pellón & Guinda 2010; Burk & Reyman 2014; Lamberg 2013) 및 특허 번역의 장르 연구(Aragonés 2008, 2010), 특허 번역사의 현황에 대한 연구(Leonard 1994; Tsai 2008a), 특허명세서 요약서에 대한 텍스트 분석 연구(Tsai 2010), 특허 번역의 전략에 대한 연구(Aragonés 2007)등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1) <http://www.etnews.com/20140513000124/>

2) <http://www.etnews.com/20140513000124/>

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재산 전문 번역사들이 지식재산 번역에 대한 개괄 및 시장 상황, 그리고 번역 전략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Cross 2007, 2010a, 2010b; Gooding 2001; Hartman 2007; Meraw 1993; Vitek 2001, 2007, 2011). 더 나아가서 지식재산 시장의 번역 수요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1960년대부터 강조되어 왔다(Bamberger 1962; Tsai 2010: 7 재인용). 이에 반해 국내 지식재산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특허기계번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이용훈 외 2005; 최승권 2007; 최승권 외 2006; 최승권 외 2007; 최승권 외 2012) 지식재산 번역 및 전문적인 지식재산 번역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첫째, 특허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특허번역의 정의, 중요성, 특수성 및 관련된 교육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제 2학기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실시한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의 영한/한영 특허 번역 수업 과제와 설문을 중심으로 영한 및 한영 특허 번역의 특수성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전문 특허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특허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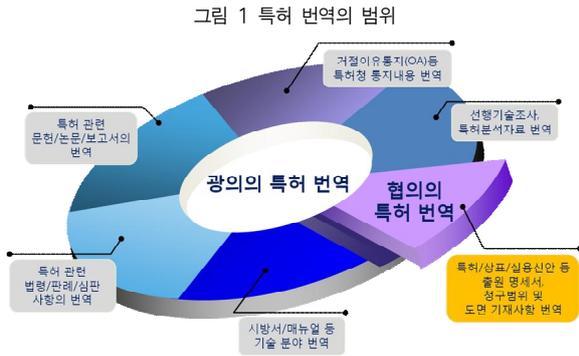
2.1. 특허 번역의 정의

기술의 발달이 고도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제22조 2항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한다(윤상원 2014: 134). 지식재산권은 창작보호 여부, 법 목적, 규제형식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세부적으로 분류되며(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12: 11), 지식재산권의 분류 및 정의는 국제적으로 상당 부분 통일 되어 있다. IPO

(2011: 4; Lamberg 2013: 1 재인용)에 따르면 ‘지식재산’은 주로 ‘특허’로 정의되나 이 외에도 상표, 디자인, 저작권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지식재산을 여러 권리 중 가장 비중이 크며 번역 수요의 대부분이 창출되는 특허에 한정된 최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특허 번역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허 번역의 대상이 되는 특허 문서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특허 문서는 기술 문서와 법률 문서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Burk & Reyman 2014: 170). 우선 고도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의 본질상 각 특허가 대상으로 하는 발명 분야의 기술 용어와 개념이 문서에 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절차법인 특허법에 따라 조항, 규정 등을 참조하여 이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특허 문서는 법률 언어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특허 문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하며, 이로 인해 특허 문서는 나름의 복잡한 문장 구조와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Lamberg 2013: 2). 기술과 법률의 두 장르를 모두 아우르는 특징으로 인해 기술분야에서 종사하는 엔지니어나 연구원, 법조계에 종사하는 판사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특허 문서의 작성이나 번역에 참여하는 변리사, 번역사 및 여타의 대리인이나 관련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특허 문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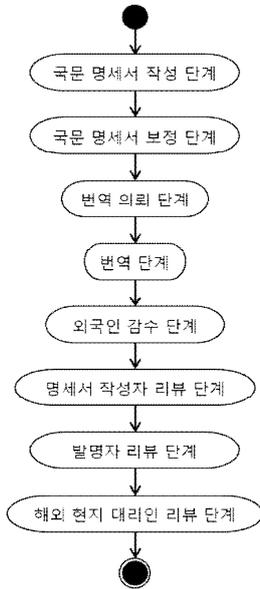
최근 들어 국제 특허 출원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출원을 위해 이러한 특허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특허 번역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Tsai 2008a). 특허 번역은 광의로 볼 때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와 같은 서류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련된 제반 문서를 외국어로 또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문으로 바꾸어 옮기는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17). 여기에는 특허와 관련된 법령 및 관례, 특허와 관련된 기술 문서나 논문, 보고서, 시방서나 매뉴얼, 거절이유통지 등 특허청의 통지사항까지 다양한 문서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연관된 가장 협의의 특허 번역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 기재사항을 해외출원을 위해 타국의 언어로 또는 국내출원을 위해 자국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의미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15) (그림 1 참조). 본고에서는 권리 창출 및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최협의의 특허 번역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15)

출원을 위한 최협의의 특허 번역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개입하여 함께 작업하는 협동 작업(collaborative work)이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34). 일례로 국내에서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일반적인 특허 번역의 절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35)

이러한 워크플로우에서 번역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번역에서 요지변경의 가능 여부이다. 여기서 요지변경은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 내에 있는 내용 이외의 사항이 보정 후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35). 해외출원이 주요 루트인 PCT를 통해 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번역시 번역이 명세서 원문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35). 즉, 국제 단계에서 작성된, 그러니까 원래 명세서와 번역이 동일해야 한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 단계에서 보정 절차를 밟거나 국내단계에서 각 지정국가별로 보정절차를 진행하나, 국제 단계에서 보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이 경우 번역은 보정이 이루어진 명세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35). 따라서 번역사는 임의로 원문에 수정을 가하는 경우 원문의 의도를 왜곡하는 문제에 더해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며, 원문을 수정하여 번역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 사항을 정리해서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오늘날 국내에서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워크플로우의 마지막 단계인 ‘해외 현지 대리인 리뷰 단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국내 특허 번역의 품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많은 경우 초벌 번역의 수준에 해당하는 번역물을 해외 현지 대리인에게 주고 검토하도록 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관행이다. 물론 현지 대리인이 해당국의 지식재산권법과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25). 하지만 현지 대리인은 원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번역 결과물만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보정이 발생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현지 대리인의 경우 통상 타임 차지(time-based charge)에 기초해 상당한 금액을 리뷰 비용으로 청구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25). 따라서 국내 번역 단계에서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지 대리인에게 들어가는 높은 리뷰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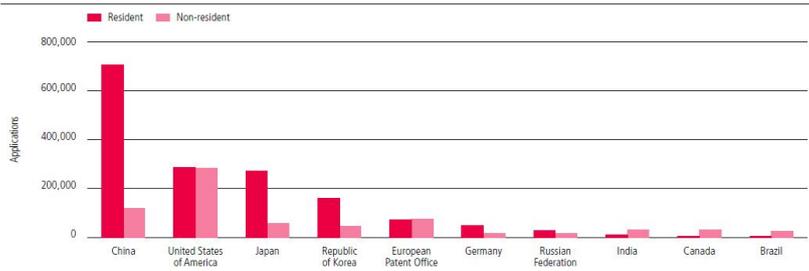
2.2. 특허 번역의 중요성

특허 번역은 우선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출원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특허 번역은 출원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서 특허 번역을 통해 해당 발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의 다양한 독자들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인식시킬 수 있어 선행기술의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즉, 공개된 출원 문서는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문서인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정보원(source)인 것이다(Tsai 2008b).

특허 번역이 필요한 법률적인 이유는 각국에서 취득한 특허는 각각 독립적이며 타국에서의 특허의 운명과 관계없이 발생, 존속 및 소멸한다는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또는 1국 1특허주의)’과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로 필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자국어주의’를 대부분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17). 이 때문에 해외에서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해당국가의 언어로 특허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가 국내에 출원되는 출원(incoming 출원)과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하는 출원(outgoing 출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특허 번역의 수요도 증가일로에 있다. 특허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지식재산 G5(한국, 미국, 일본, 중국, EPO)에 포함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29).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 2013년 현재 특허출원순위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WIPO 2014: 12)(표 1 참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동이 여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활발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1 국가별 특허출원건수



(WIPO 2014: 12)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허 번역은 미흡한 지식재산권의 질적 수준과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은 실정이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16). 특허의 질적 수준과 시장 확보력은 다른 특허에서 인용된 횟수인 피인용비(CPP, Cites Per Patent)와 평균 패밀리 수(PFS, Patent Family Size)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32). CPP 값이 클수록 중요특허 또는 원천특허에 해당하며, PFS가 증가할수록 시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 특허청이 자체 분석한 ‘국가별 특허 질적 수준 및 시장 확보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CPP와 PFS는 G5의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참 떨어지며 심지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32). 지식재산권의 이러한 질적 수준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품질이 미흡하거나 그 시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특허 번역의 수준과도 아예 무관하지만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특허 번역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 문서의 성질과 동시에 고도한 기술에 대한 정보원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특허의 인용횟수나 패밀리 수가 작다는 것은 번역된 우리나라의 특허 문서가 정보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인용되어야 할 곳에 적절하게 인용될 수 있을 만큼의 품질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특허 번역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허권 획득 과정에서 다수의 거절 이유를 발생시켜 과도한 중간처리 비용을 유발한다. 또한 지식재산의 등록에 장애를 초래하며 권

리화 이후에도 충분한 권리범위 확보가 어려워지는 한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16). 한마디로 특허 번역은 효과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각 특허의 핵심인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그림 3 참조).

그림 3 특허 번역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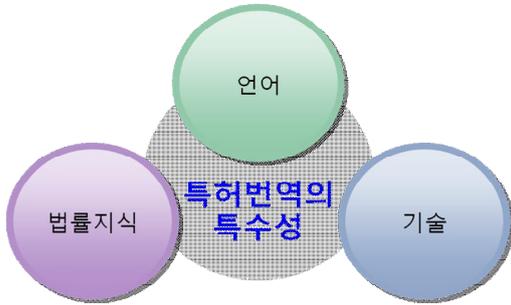


2.3. 특허 번역의 특수성

앞서 특허 번역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특허 번역의 대상이 되는 특허 문서는 법률 문서의 특징과 기술 문서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복합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문서의 특징으로 인해 특허 번역은 특허권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서 타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타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지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5). 특허 번역의 이러한 특성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1b)의 『초급인재양성을 위한 연구』 중 지식재산 번역 직무에 대한 직업 명세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1b: 40)는 특허 번역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번역 직무에 대해 영어, 일본어 등의 기본적인 어학 능력이 필수이며 단순한 번역이 아닌 기술적 용어와 법적 용어를 숙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 타 직무보다 더 많은 교육훈련 기간이 필요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식재산법 제도와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관련 전문 기술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특허 번역은 해당 언어, 전문 기술, 그리고 법률지식의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제대로 된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번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진다(그림 4 참조).

그림 4 특허 번역의 특수성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6)

우선 언어와 관련해서 모든 번역 작업에서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특허 번역에서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허 번역의 대상이 되는 명세서의 경우 번역사가 원문의 용어를 임의로 바꾸거나 오역하면 권리를 아예 획득하지 못하거나 보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원문과 다른 번역으로 인해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b: 19).

특히 특허 명세서는 권리를 얻고자 하는 발명을 길지만 정교하게 묘사한 법적 정의이다(Cross 2007: 19). 따라서 개별 단어의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 나열해서 의미를 재생산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 특허청이나 심사관, 그리고 조사 기관들은 명세서에 기술된 기술의 보편적인 정의보다 명세서에 기재된 표현에 의거해서 법적 결정을 내린다(Cross 2007: 19). 따라서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도착 언어로 재생산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특허 번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더해 특허 명세서의 특징 중 두드러지는 하나가 문장 길이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문과 영문³⁾ 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약서를 예로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13호 서식의 요약서 작성방법에 의해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및 효과를 총 400자 내외로 작성해야 한다(박동식 2009: 12). 문제는 요약서 전체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2년에 등록된 삼성전자의 출원, ‘하이브리드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요약서⁴⁾는 총 403자의 길이의 두 문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두 번째 문장의 길이가 무려 309자에 달한다. 따라서 이를 타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사는 이 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절하여 원문에 충실하도록 도착 언어로 옮겨야 한다.

미국의 경우, 35 USC 111(a)에 의거해 제출되는 모든 출원은 37CFR 1.72(b)의 규정에 따라 요약서(Abstract or Abstract of the Disclosur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MPEP 608.01(b)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요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50-150개 사이의 단어를 사용한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이 15라인이 넘는 경우 요약서는 150단어가 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박동식 2009: 9). 영문 요약서도 국문 요약서와 마찬가지로 긴 문장 길이가 두드러지는

- 3) 본고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선택한 여러 국가 중 미국 특허청의 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 4) 카메라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입체 영상을 제공하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기의 자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된 구조의 하이브리드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이 개시된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는 본체와; 입체영상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와; 본체에 장착되어, 사용자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시청 위치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상대적인 자세 변화를 산출하는 제1산출부와; 본체에 장착되어, 디스플레이의 각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와; 자이로스코프에서 감지된 각속도 변화로부터 시청 위치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상대적인 자세 변화를 산출하는 제2산출부와; 제1 및 제2산출부 각각에서 얻어진 산출량을 입력받아, 디스플레이의 보정된 자세 변화량을 산출하는 칼만 필터;를 포함하여, 사용자와 디스플레이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시, 사용자의 우안과 좌안 각각이 위치된 시역에서 우안용 영상신호와 좌안용 영상신호를 반전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Frame/>

특징 중 하나다. 최승권(2007: 305)에 따르면 영어 특허 문장은 병렬 및 복잡한 수식에 의한 장문이 많은 구문적 특성을 지니며, 특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요약서나 청구항의 경우 평균 문장 길이가 약 35단어이다. 일례로 2009년에 미국에서 출원 및 공개된 ‘모바일 기기용 듀얼 심(SIM) 카드 어댑터’에 대한 요약서⁵⁾는 총 110단어의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특허 번역의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옮기는 능력과 비교적 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도착 언어로 옮기는 능력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특허 번역사는 기술적인 내용 및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 특허 문서는 심사관, 심판관을 포함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19).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특허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 문서를 번역하는 사람은 번역물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번역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 번역사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전공지식과 관련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도착 언어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0: 11-12)는 이에 대해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VCR)에 일반적으로 탑재되는 기능인 ‘예약녹화’를 예로 들었다. 특허 번역시 ‘예약녹화’를 ‘reserve recording’ 또는 ‘reserved recording’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어민이 이를 보았을 때에는 녹화를 보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약 녹화’는 ‘scheduled recording’이나 ‘timed

5) What is disclosed is an apparatus for a du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 card adapter, comprising: a first storage space for a SIM card tray ejection pin configured to eject a SIM card from the mobile device; a second storage space for a SIM card tray for a mobile device; a connector operational to be entered into a SIM card slot for the mobile device, said connector comprising an input and an output; a switch comprising an input and at least two outputs, said switch operational to couple the switch input to a selected one of the at least two switch outputs; and at least two integrated SIM card holders.

<https://www.google.co.kr/patents/US20140274210?dq=Dual+sim+card+adapter+for+mobile+device&hl=en&sa=X&ei=mG6uVMjLIs388QXCwYHgAg&ved=0CB0Q6AEwAA/>

recording'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기술지식과 관련해서 전문 용어가 명료하고 일관되게 번역되어야 한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19).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 용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헛갈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 번역시 특허와 관련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특허 문서는 법률 문서이며, 따라서 특허 번역을 수행하는 것은 일종의 법률 번역이다. 법률 번역은 번역시 원문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번역과 차별을 이룬다(신지선 2012: 122). 이러한 법률번역의 일종인 특허 번역의 경우, 번역물의 질과 완성도에 따라 권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권리에 대한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재산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보편적인 법률 번역의 이러한 특성에 더해 특허 번역에서는 특허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절차와 시행령에 대해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특허 번역은 특허법 및 시행 규칙과 심사기준에서 정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심사기준 등에 정한 기재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되고 권리화된 후에도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19). 충분한 특허 지식을 갖추지 못한 번역사가 번역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0: 25-26)는 미국 특허청에서 요약서와 관련된 방식거절 통보⁶⁾를 예로 든다. 요약서는 설명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50-150단어 범위 내에서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청구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요약서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간과하고 번역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주로 이러한 방식거절통보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출원인은 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상

6) “The abstract should be in narrative form and generally limited to a single paragraph on a separate sheet within the range of 50 to 150 words. The form and legal phraseology often used in patent claims, such as ‘means’ and ‘said’, should be avoided”(특허청 2010: 26).

당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1a: 173)는 지식재산번역능력시험 제도의 도입방안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지식재산 번역 서비스 수요자 및 지식재산 번역사 총 241명(지식재산 번역 서비스 수요자 135명, 번역사 106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2011년에 수행된 이 설문에서 지식재산 번역이 일반번역에 비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241명 중 총 178명이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기술 분야별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 128명 (71.9%), ‘명세서 작성 및 해석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 122명 (68.5%),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 53.9%(96명) 순으로 지식재산 번역이 어려운 각 이유가 골고루 나타나는 형태를 보였으며,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10명(5.6%)에 불과했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233). 이러한 설문 결과는 특허 번역에서 언어 능력과 함께 앞서 언급한 기술지식과 법률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2.4. 특허 번역 교육 현황

상술한 바와 같이 특허 번역은 언어 지식과 기술지식, 그리고 법률지식이 모두 요구되는 복잡한 작업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1a: 199-200)는 앞 절에서 언급한 지식재산 번역 능력시험제도의 도입방안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번역이 다른 분야의 번역에 비해 체감되는 난이도가 높은 반면 그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번역 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이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과반수 이상(53.3%)의 지식재산 번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과 대다수(72.0%)의 번역사들이 지식재산 번역의 품질이 낮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 ‘지식재산 번역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부족’을 꼽았다. 특허 번역과 관계된 당사자들이 느끼는 교육 부족의 문제 및 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식재산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교육 양성기관 및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b: 40).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9월~10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1b: 101-131)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초급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 교육을

3주간 시행하였다. 총 17명의 미취업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이 교육 프로그램은 IP(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제도, IP 조사, IP 분석, IP 컨설팅, IP 분쟁, IP 번역, IP 거래 등 지식재산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직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본 연구의 주제인 IP 번역의 경우 13일차 오후에서 14일차 오전까지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IP 번역의 이해 및 방법, IP 번역의 사례연구, IP 번역의 실습의 순서로 이루어져있다. 강사는 전문 번역사가 아닌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의 대표 및 기술거래사회 공학박사로 구성되었다. 교육 후 설문 결과를 보면, 총 수강생 17명 중 13명이 ‘매우 만족’을 선택할 만큼 전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과목별 만족도와 관련해서 IP 번역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1b: 131)는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IP 업계 경력이 최소 5년 이상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급인재가 단시간 내에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지식재산 번역에 대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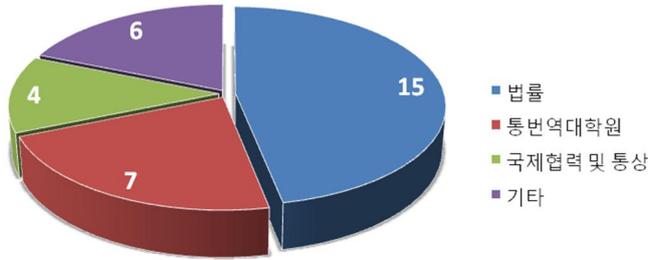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특허 번역의 특성이 실제로 특허 텍스트의 번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언어, 기술지식, 법률지식의 세 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설문을 통해 특허 번역 수행시 어려운 점을 알아본 후 특허 번역 교육에 대한 수요 및 의견을 분석한다. 특히 본 장은 2014년 2학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실시한 제 2기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영어 전공) 중 11월에 실시한 특허 번역 수업 내용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다.

3.1.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

제 2기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본 과정은 총 16주간 매주 1회 4시간(특강 1시간 반, 번역 수업 2시간 반)씩 진행되었으며, 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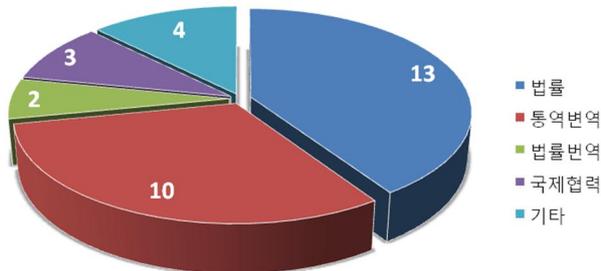
및 증서에서부터 법령, 송무문서, 기업보고서, 특허문서, 판결문, 국제법, FTA 등 국제 협약, 외교문서 등 법률 번역의 분류에 속하는 다양한 문서들에 대한 기본 지식과 번역 기술을 익히도록 설계되었다. 영어 전공 과정에 등록한 수강생은 총 32명으로 이 중 15명이 법률 관련 학위를 소지하였으며,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이 7명, 국제 협력 및 통상 관련 학위 소지자가 4명, 기타 전공이 6명이었다(표 2 참조).

표 2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 한영 전공 수강생 전공 현황



여기서 기타 전공에 속하는 6명도 업무 분야는 법률 관련, 통역과 번역이 포함된 국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을 보면, 법률 관련 경력이 13명, 통역번역 관련 경력이 10명, 법률번역 경력이 2명, 국제협력 경력이 3명, 기타가 4명이었다(표 3 참조).

표 3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 한영 전공 수강생의 경력 분포



상기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 또는 언어를 전공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강생의 비중이 높아 앞서 특허 번역의 특수성에 언급한 요소 중 일부를 이미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과 비교해서 특허 텍스트의 이해 및 번역의 수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수강생들은 실제 특허 번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환경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실제 특허 번역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정도의 번역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특허 번역 수업이 전체 과정 중 1회로 진행된 짧은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상술한대로 수강생의 전공과 경력이 관련성이 높다는 점, 수강생의 경력으로 예상해 보건대 실제로 특허 번역을 수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국내 전문 특허 번역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공개된 특허 공보 외에 특허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는 점 또한 본 수업의 결과물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수업의 특성상 번역 작업 후 번역에 대한 수강생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본 수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였다.

본 장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한 텍스트는 수업에서 사용한 것으로 미 애플사가 미국 특허청에 2009년 출원한 ‘edge-lit backlight unit with thin profile’에 대한 영문 요약서와 삼성전자가 2010년 국내 특허청에 출원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국문 요약서의 총 두 건이다. 영어 → 한국어, 한국어 → 영어의 양방향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두 건 모두 특허명세서 중 ‘요약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된 양식을 지향하는 특허 문서의 특성상 언어의 방향에 상관없이 번역시 어려운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사하여 함께 다루도록 한다.

수강생들이 번역 작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미 애플사의 특허는 국내 출원을 목표로 하는 incoming 출원이고, 삼성전자의 특허는 PCT 절차를 통해 국제 단계를 거쳐 미국을 대상국으로 하여 국내단계에 들어가는 outgoing 출원임을 번역 브리프로 제시했다.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로부터 특허 번역 및 특허 번역 교육과 관련한 의

견을 취합하였다. 학생들이 서베이몽키⁷⁾와 연구자의 이메일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수강생 총 32명 중 20명(62.5%)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첫째, 수강생의 번역 결과물을 특허 번역의 특성인 언어, 기술지식, 법률지식의 세 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본다. 둘째, 특허 번역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및 의견을 분석하여 전문 특허 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3.2. 번역 분석

3.2.1. 언어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원문에 대해 번역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문장이 긴 경우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여 목표 언어로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원문에 대한 충실한 번역과 관련해서 영한 번역의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약서는 청구항과 달리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요약서는 읽는 사람이 그 특허발명의 상세사항을 알기 위해 전체 특허 본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개시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박동식 2009: 10).

[예 1]

ST: An edge-lit backlight unit for a display is provided.

TT 1: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를 위한 엣지-릿 백라이트 유닛이 체계화 되어 있다.

TT 2: 에지-릿 백라이트(Edge-lit backlight unit)의 도면을 제공한다.

TT 3: 디스플레이용 엣지형 백라이트 유닛이 출시되었다.

TT 4: 모서리전광 후면발빛(backlight) 장치가 디스플레이에 탑재되어 있다.

위 [예 1]의 원문은 전형적으로 특허 명세서의 요약서를 시작하는 문장(opening sentence)로 원문에 충실하게 ‘~을 제공한다’로 번역하면 된다(WIPO

7) www.surveymonkey.com

2012: 7). 하지만 TT 1에서 TT 4에 이르는 학생 번역을 살펴보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함으로써 요약서의 첫 문장의 핵심인 대상 발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TT 1의 경우, ‘체계화된’ 옛지-릿 백라이트 유닛에 대한 출원으로 이해되며, TT 2의 경우 ‘for a display(디스플레이 용)’의 의미를 번역에서 누락함으로써 발명의 대상을 확장하여 ‘범용’ 옛지 발광 백라이트에 대한 발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읽힌다. 더 나아가 TT 2의 경우, 원문에 없는 ‘도면들’을 삽입하여 번역물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 명세서가 특정 발명에 대한 것이 아닌 발명의 도면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발명’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의 정의상 발명의 도면에 대한 명세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TT 3은 본 명세서의 대상 발명인 ‘디스플레이용 옛지형 백라이트 유닛’이 ‘출시되었다’고 번역함으로써 역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TT 4 역시 원문의 의미를 왜곡한다. 원문인 요약서의 시작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에 탑재된 모서리전광 후면불빛 장치를 제공한다’이다. 하지만 TT 4와 같이 번역한 경우, 번역문은 해당 명세서에서 권리를 부여 받고자 하는 발명의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영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 2]

ST: 이동 단말

TT 1: mobile devices

TT 2: a portable terminal

TT 3: mobile equipment

TT 4: mobile telephone

TT 5: mobile phone

원문의 ‘이동 단말’은 ‘mobile terminal’을 말한다. 여기서 단말, 즉 ‘terminal’은 컴퓨터나 컴퓨팅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시하는 데 쓰이는 전자 하드웨어 기기를 말하며, 통신 단말의 경우 전화기, 특히 휴대전화를 단말기라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무선랜에서 액세스 포인트의 기능이 없는 클라이언트 통신 단말기도 단말기라 칭한다.⁸⁾ 한편 TT 1의 ‘device’는 어떤 특정

목적에 위하여 구성된 기계적, 전기적, 전자적인 기기를 가리키며, 컴퓨터에 온라인으로 연결한 주변 기기 장치 및 특수한 기능을 갖는 부품 또는 장치를 말한다.⁹⁾ 따라서 ‘device’(장치 또는 기기)는 ‘terminal’(단말(기))보다 넓은 의미의 장치들을 포괄하고, 그렇기에 TT 1과 같이 번역할 경우 읽는 사람은 원문보다 넓은 의미로 해당 특허를 이해할 수 있다. TT 3의 ‘equipment’는 TT 1의 ‘device’와 동의어로 사용되며¹⁰⁾, 따라서 TT 1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TT 4와 TT 5의 경우는 TT 1, TT 3과 반대로 ‘단말’을 ‘전화기’로 한정함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문보다 좁은 의미로 해당 특허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원문의 ‘이동 단말’에는 휴대폰 외에 태블릿 PC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전화기’로 한정할 경우, 전화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이동 단말’은 제외된다. TT 2는 ‘이동’을 ‘portable(휴대용)’으로 번역하여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했다.

위의 두 가지 예시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요약서의 문장이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도, 또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전문 기술이 나오지 않아도 특허 문서에서 요구하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이 긴 경우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여 목표 언어로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특허 문서의 문장은 보통 그 길이가 긴 편이다. 특히 과제로 제시한 텍스트 중 한영 번역을 위한 삼성전자의 특허 요약서는 요약서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길이는 총 249자이다. 전체 요약서 중 앞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3]

ST: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이동 단말로부터 응용 서비스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요청한 응용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통한 응용 서비스인지를 판단하고,...

TT 1: The base station receives application service requests from a

8) <http://ko.wikipedia.org/wiki/%EB%8B%A8%EB%A7%90%EA%B8%B0>(위키피디아)

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17186&cid=50324&categoryId=50324>(네이버 사전)

10) *Ibid.*

portable terminal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Determining whether the portable terminal requesting the application service through a network.

TT 2: In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a base station receives an application service request from the mobile terminal, and the mobile telephone stated above determines whether the application service requested by the mobile telephone is through the network noted above.

TT 3: Under the mobile communications system, a base station receives a request for an applied service from the mobile terminal equipment which judges whether the requested applied service is made through the network or not.

TT 4: Mobile Communication System receives an application service request from a mobile terminal and determines whether the application service requested by the mobile terminal is an application service through a network.

ST는 국문 요약서의 시작 부분이다. 원문을 읽어보면 “이동통신 시스템 내에서 기지국이 ...을 수신하고, ...을 판단한다.”이다. 이에 대해 TT 1은 ‘Determining’의 주어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하 문장은 주어도 동사도 없는 비문으로 번역되었다. TT 2와 TT 3는 ‘~을 수신하고 판단하는’ 주체를 ‘이동 단말’로 잘못 이해하여 번역하였으며, TT 4의 경우 주체를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다.

비교적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로 인해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역한 사례는 영한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 4]

ST: Additionally, in one embodiment, the turning film may include multiple prisms that receive and redirect the light emitted from the light guide, and that include apex angles of less than or about sixty degrees.

TT 1: 또한 터닝 필름은 다중 프리즘이 도광체로부터 방출된 빛을 수신하고 전향하며, 상기 도광체가 60도보다 적거나 비슷한 첨두각(apex angle)을 포함 할 수 있다.

TT 2: 추가적으로 하나의 통합체에서 휘어진 막은 광통로로부터 발산된 빛을 받고 돌리는 다중프리즘들을 포함할 수 있고 약 60도 또는 그보다

작은 각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TT 3: 더불어 그 구현의 하나로, 터닝 필름은 라이트가이드에서 방출되는 빛을 받아 재전송하는 다중프리즘을 포함할 수 있고, 약 60도 또는 그 미만의 꼭지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TT 4: 추가적으로 터닝필름은 도광에서 분출된 빛을 흡수하고 다시 내보내는 복수의 프리즘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약 60도 미만의 입사각 정점을 포함한다.

ST에서 두 개의 that 절은 모두 ‘multiple prisms(복수의 프리즘들)’을 꾸며준다. 그런데 TT 1을 보면, 첫 번째 that 절을 “터닝 필름은 다중 프리즘이 도광체로부터 방출된 빛을 수신하고 전향하며”의 이중 주어 구문으로 번역함으로써 ‘도광체로부터 방출된 빛을 수신하고 전향하는’ 것이 ‘프리즘’이기보다는 ‘터닝 필름’으로 읽히게 한다. 두 번째 that 이하도 “상기 도광체가 60도보다 적거나 비슷한 첨두각(apex angle)을 포함할 수 있다.”로 번역하여 ‘60도 이하의 첨각을 포함하는’ 주체가 ‘도광체’로 읽히도록 한다. 즉, 원문을 잘못 이해하여 ‘프리즘’을 설명하는 두 개의 절을 각각 ‘터닝 필름’과 ‘도광체’에 대한 것으로 번역한 것이다. TT 2는 두 번째 that 절을 “약 60도 또는 그보다 작은 각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번역하여, 그 주체가 모호하다. TT 3과 TT 4는 두 번째 that 절을 위와 같이 번역함으로써 터닝 필름을 꾸며주는 것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나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다른 분야의 번역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번역이 다른 분야의 번역과 차별화되는 점은 원문에 지극히 충실하지 않는 경우 번역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명세서 전체의 내용 및 권리범위를 잘못 이해하도록 오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번역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데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압축해서 요약한 내용이어서 원문의 이해가 쉽지 않은데다가 특히 문서의 특징상 문장의 길이가 길어 원문을 이해하는데 다른 분야의 번역에 비해 좀 더 많은 노력이 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3.2.2. 기술지식

기술지식에서는 첫째, 전문적인 기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전문 용어를 제대로 번역하여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제로 제시한 텍스트 중 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동통신 시스템’, ‘응용 서비스’ 등의 용어로만 이루어진 한국어 요약서의 경우, 원문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외에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어 요약서의 경우 특기할만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영어 요약서의 경우, 물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빛의 성질에 대한 지식을 숙지해야 전문의 이해가 가능하며 따라서 학생들도 번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문적인 기술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 5]

ST: The turning film may be configured to redirect light received from the light guide toward a normal of the turning film.

TT 1: 터닝 필름은 도광판으로부터 전달받은 빛을 터닝 필름의 정상면으로 재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TT 2: 이 터닝 필름은 라이트 가이드로부터 입사한 빛을 정상적인 터닝 필름을 향해 재출사 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TT 3: 그 전환막은 도광에서 받은 빛을 보통의 전환막에 전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TT 4: 터닝 필름(turning film)은 라이트가이드로부터 받은 빛을 터닝 필름의 정상적인 방향으로 재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TT 5: 위의 터닝필름은 정상적인 터닝필름의 도광판에서 흡수한 그 빛을 다시 내보내도록 설정된다.

TT 6: 전환필름은 라이트가이드의 수신광을 표준전환필름으로 재전송하도록 배열되어 있다.

TT 7: 반사필름은 도광판에 입광된 광을 반사필름의 전면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구성된다.

위의 [예 5]는 과학에서 사용하는 ‘normal’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역한 사례들이다. ‘normal’은 곡선 C 위의 한 점 P를 지나고 그 점에서

접선 t에 수직인 직선으로 우리말로 ‘법선’으로 번역된다.¹¹⁾ 따라서 ST의 밑줄 그은 부분은 ‘전환 필름의 법선을 향해’로 번역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수강생의 대부분이 ‘normal’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전체 문장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강생들이 제출한 번역의 대부분은 ‘normal’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빛의) 방향을 바꾸어 주다’의 의미인 ‘redirect(재지향하다)’의 의미까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상기 TT의 대부분이 ‘빛의 방향을 바꾸어 주다’의 의미를 담지 못한 채 단순한 ‘전송’, ‘전달’ 등으로 번역했다. 심지어 TT 3의 경우, ‘용도를 바꾸다’의 의미인 ‘전용’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했다.

이러한 사례는 아래의 [예 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 6]

ST: Additionally, in one embodiment, the turning film may include multiple prisms that receive and redirect the light emitted from the light guide, and that include apex angles of less than or about sixty degrees.

TT 1: 또한 터닝 필름은 다중 프리즘이 도광체로부터 방출된 빛을 수신하고 전향하며, 상기 도광체가 60도보다 적거나 비슷한 첨두각(apex angle)을 포함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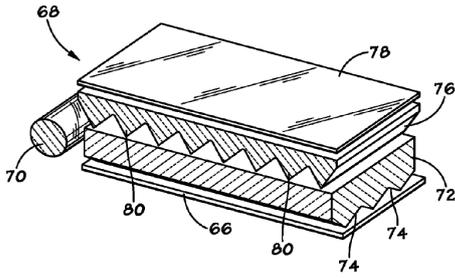
TT 2: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터닝 필름은 라이트 가이드에서 출사된 빛을 입사하여 재출사하고, 약 60도 각도 이하의 정각을 포함하는 복합 프리즘이 포함될 수 있다.

TT 3: 추가적으로 하나의 통합체에서 휘어진 막은 광통로로부터 발산된 빛을 받고 돌리는 다중프리즘들을 포함할 수 있고 약 60도 또는 그보다 작은 각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예 6]의 ST에서 말하는 ‘multiple prisms’는 ‘복수의(또는 다수의) 프리즘들’로 아래 동 명세서의 대표도인 그림 5에서 ‘80’으로 표기된 톱니 모양의 선들을 말한다.

11) <http://www.scienceall.com/%eb%b2%95%ec%84%a0normal/>(과학백과사전)

그림 5 “Edge-lit backlight unit with thin profile”의 대표도¹²⁾



이를 [예 6]의 TT 1과 TT 2는 각각 ‘다중 프리즘’과 ‘복합 프리즘’으로 번역하여 하나의 프리즘이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읽히도록 잘못 번역하였다. TT 3의 경우, 이를 복수로 하여 ‘다중 프리즘들’로 번역하여, 여러 겹으로 구성된 프리즘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으로 읽히도록 번역하였다. 앞의 [예 5]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기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을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물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되었다.

내용의 이해에 더해 기술 번역에서 주로 논의되는 전문 용어의 문제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번역 중 전문 용어가 문제가 된 예는 영한 번역에서 ‘incident angle(입사각)’을 ‘우연한 각도’로, ‘apex angle(꼭지각)’을 물건의 뾰족한 모서리나 뾰족 나온 부분을 뜻하는¹³⁾ ‘첨각’으로 번역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번역의 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다른 기술 문서들과 다르게 복잡한 기술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글이 아니다. 또한 문서를 접하는 대상 독자층도 대부분 일반인이 아닌 관련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이다. 따라서 특허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사는 전문가를 위한 원문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12) <https://www.google.co.kr/patents/US8248554?dq=edge-lit+backlight+unit+with+thin+profile&h=ko&sa=X&ei=DTmyVILsNsaB8QXlhiDQBw&ved=0CBsQ6AEwAA/>

13)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7264300/>(네이버 국어사전)

3.2.3. 법률지식

법률지식과 관련해서는 첫째, 법률 용어가 맞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특허법에서 정한 기재 형식에 맞게 작성되어 방식심사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특허법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용어가 맞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본 수업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영어, 한국어 모두 명세서의 요약서 부분이었다. 영어 원문에 ‘abstra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발명품의 개요’, ‘개요’ 등으로 번역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번역이며, ‘abstract’는 발명의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문서로 ‘요약’ 또는 ‘요약서’로 번역되어야 한다(특허청 2008: 3). 반대로 국문 원문에 ‘요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어로 ‘abstract’로 번역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번역을 살펴보면 이를 ‘summary’, ‘brief’, ‘summary of the invention’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었다. 이 또한 법률 용어를 잘못 번역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영어 원문의 ‘embodiment’ 또한 특허 명세서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는 전문 용어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형태를 부여한 예를 뜻하며 ‘실시예’로 번역한다(특허청 2008: 118). 따라서 영어 원문의 ‘in one embodiment,’는 ‘일 실시예에서,’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이를 ‘일구현예는’, ‘하나의 전형에’, ‘구현의 한 예로’, ‘한 구현에서’, ‘하나의 통합체에서’, ‘구체화된 것을 보면’ 등으로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번역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둘째, 특허 번역의 주요 대상인 명세서의 경우 특허법에서 정한 기재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방식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경우 요약서와 관련해서 방식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50 ~ 150 단어 범위의 분량과 ‘means’나 ‘said’ 같은 단어들을 요약서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영 번역 결과물들은 모두 50 ~ 150 단어 사이의 분량이었으며, 요약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들을 쓰지 않았고, 설명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방식 심사의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은 특허 번역을 수행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 중 특허 수업에서 사용한 학생들의 번역물을 가지고 언어 지식, 기술지식, 법률지식의 특허 번역 특수성에 따라 번역물을 살펴보았다. 언어의 경우 모든 종류의 번역에, 기술지식의 경우 기술 번역에, 법률지식의 경우 법률 번역에 필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특허 번역에서는 이 세 가지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번역과 다른 차별점이 있었다. 또한 번역 결과물 분석을 통해 독특한 특허 분야의 문장 특성과 통상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글을 쓰고 이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중적이지 않다는 특징으로 인해 특허 번역은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통번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음을 알 수 있었다.

3.3. 번역 과정에 대한 설문 결과

특허 번역 수업 후 위의 번역 결과물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특허 번역을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번역 수행과 관련된 설문 문항은 크게 네 가지로, (1)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 강의 수강 및 실무 경험이 있는지, (2) 영한 특허 번역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3) 한영 특허 번역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4) 개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경험이 특허 번역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개방형 문항으로 물어 보았다.

첫 번째 문항인 지식재산권 관련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 20명 중 14명(70%)이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그 외에 지식재산권 관련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2명,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고 관련 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1명,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고 번역은 아니지만 관련한 실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1명,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으며 번역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1명,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실제로 관련해서 번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모두 있다고 답한 학생이 1명이었다. 이를 통해 수강생의 대부분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접할 기회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참조).

표 4 지식재산권 관련 경험

| 지식재산권 관련 경험 | 응답자(N=20) |
|--------------------------------|-----------|
| 관련 경험 전무함 | 14 |
|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 수강 | 2 |
|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 수강 + 번역 경험 | 1 |
|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 수강 + 실무 경험 | 1 |
|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 수강 + 번역 경험 + 실무 경험 | 1 |
| 기타 | 1 |

첫 번째 문항과 연관해서 네 번째 문항을 통해 개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경험이 특히 번역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지식재산권 관련한 강의 수강, 번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경우 ‘특히 명세서가 익숙해서’ 번역 수행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 수강 및 번역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배경지식으로 인하여 해석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이 두 학생의 응답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강의나 업무 경험이 특히 번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관련 경험은 전무하지만 “자연과학 전공이어서인지 특허문서 자체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의 이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는 특허 문서의 특수성 중 하나인 기술지식과 관련해서 기술지식을 갖출 경우 특허 번역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련 경험은 전무하나 “기계 기술번역 경험이 과제 수행에 도움되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그 외에 관련 경험은 전무하지만 “기업회계와 지식재산권 등은 기업 마케팅실무와 관련하여 CI 과정 중에 상표등록이나 출판 또는 E-business상 계약서 임대서 작성 등 모두 실무에서 필요한 문서들이라 매우 흥미로웠으며 통상 관련해서는 국제경영 강의때 많이 접했던 부문이라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다.

두 번째 문항인 영한 번역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20명 중 2명을 제외한 18명이 답변했다. 흥미로운 점은 개방형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명 중 15명이 ‘용어’ 때문에 어려웠다고 답변한 사실이다. 물론 응답자에 따라 이는 ‘이공계 관련 용어’, ‘공학 용어’, ‘특허 용어’ 등 구체적인 분야의 용어로 한정되기도 하였고, ‘전문용어’, ‘용어’와 같이 일반적으로 문서 전반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특허분야의 관련 문서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번역을 위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초반에 많은 리서치가 필요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응답자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특허 문서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학생들은 정확한 우리말 용어로 번역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때 문제가 된 용어는 법률과 관련된 특허 용어와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전문 용어 둘 다였다. 법률 번역은 대체로 법률 용어에만, 기술 번역은 대체로 기술 용어에만 익숙해지면 되는 반면 특허 번역의 경우 특허 용어와 기술 용어 두 가지에 다 익숙해져야 하므로 학생들이 느끼는 용어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용어로 인해 영한 번역이 어려웠다고 지적한 15명 외에 나머지 3명은 “특허에서만 볼 수 있는 용어/스타일/문서 양식 파악이 어려웠다”, “해당 분야-공학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기초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각각 답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영한 특허 번역시 느꼈던 어려운 점은 대부분 기술지식과 법률지식의 부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영 번역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도 앞선 영한 번역시 어려웠던 점에 대한 문항과 마찬가지로 총 응답자 20명 중 2명을 제외한 18명이 답변을 제시했다. 한영 번역과 관련된 본 문항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영한 번역시 어려웠던 점과 동일한 답변을 한 응답자가 5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영한 번역과 한영 번역이 동일한 이유로 어려웠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특허에서만 볼 수 있는 용어/스타일/문서 양식 파악이 어려웠다”, “특허용어”, “용어”, “해당 분야-공학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기초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특허분야의 관련 문서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번역을 위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초반에 많은 리서치가 필요했다”였다. 본 장의 앞부분에서 특허 번역 분석에 앞서 영한 번역과 한영 번역을 모두 다루는 것과 관련해 두 건 모두 특허명세서 중 ‘요약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된 양식을 지향하는 특허 문서의 특

성상 언어의 방향에 상관없이 번역시 어려운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사하여 함께 다루도록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수강생들의 의견은 특히 번역의 경우 언어의 방향보다는 전반적인 특히 문서의 특징이나 관련 용어, 관련 전문 지식이 번역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영 번역시 어려운 점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답변은 긴 문장에 대한 것들이다. 응답자 18명 중 5명이 “문장 끊기”, “문장 끊어서 번역하기”, “긴 문장”, “원문의 문장이 너무 길어서 번역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는 수업에서 사용한 텍스트의 요약서 부분이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한편으로는 긴 문장이 특히 문서의 특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한영 번역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특히 명세서를 번역할 때에도 체감할 수 있는 어려움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 외에 “특히 번역 style”, “특히 스타일에 맞게 번역하기” 등 스타일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며, “기초영문법과 어휘력 부족”, “1:1로 매칭되는 영어 단어 찾기” 등 한영 번역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학생들의 답변도 눈에 띄었다.

3.4. 특히 번역 교육에 대한 설문 결과 및 제언

상기의 특히 번역 과정에 대한 설문과 함께 특히 번역 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수요와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1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 및 번역사들은 특히 번역의 난이도 및 품질을 생각할 때 전문적인 특히 번역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도 같은 필요를 느끼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설문을 수행했다.

전문 특히 번역 교육에 대한 설문은 앞서 번역 후 이루어진 설문조사와 함께 진행했으며, (1) 전문 특히 번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 전문 특히 번역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 (3) 전문 특히 번역 교육에 대한 의견의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1)은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

도록 하였으며, (2) 문항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지식, 기술지식, 영→한 번역, 한→영 번역, 영어/한국어 언어 지식을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나열하도록 하였고, (3)은 개방형 문항으로 자유롭게 답변을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응답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32명 중 20명이었다.

우선 전문 특허 번역 교육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묻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응답자 20명 중 1명을 제외한 19명이 전문 특허 번역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문 특허 번역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전문 특허 번역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

| 전문 특허 번역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 응답자(N=20) |
|----------------------|-----------|
| 예 | 19 |
| 아니오 | 1 |

전문 특허 번역 교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응답자 중 12명이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지식’을 1순위로 꼽았으며, 9명이 ‘특허와 관련된 기술지식’을 2순위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 중 6명은 ‘한국어 → 영어 번역’을 1순위로 꼽았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대체로 번역을 배우기에 앞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지식이나 해당 특허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번역보다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이루어지는 번역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필요로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 특허 번역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수강생들은 체계적인 전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학생들은 전문 교육이 필요하되 ‘실무적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수업이기를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내년이라도 전문 특허 번역 과정을 개설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특허 번역 교육하는 과정이 있으면—매우 실무적인—수강할 의향이 100%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체계를 잡아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 특허 번역을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면 꼭 수강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보다는 체계 있게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번역에만 집중해서 교육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매주 진행되는 특강 형식보다는 강사 한 분이 체계적으로 특허법, 지식재산권분야 강의를 학부수업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지식도 기초적인 것은 수요가 많은 분야순으로 기초지식을 강의하시면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그냥 수험생처럼 알려주시는 수업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포괄적 법률과정 특성상 일부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좀 더 다각도로 다양하게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양적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특허 번역의 범위가 방대하고 그 내용 역시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견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번역사 수업/비번역사(법률가 등) 수업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통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수강생과 법률을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수강생이 한 반에 섞여 있음으로 인해 서로 다른 필요를 충분한 정도로 충족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통번역 분야의 수강생과 법률 관련 분야의 수강생의 니즈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한다.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특허 번역 교육에 관련된 설문은 비록 그 규모가 작기는 하나 기존의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1a)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강조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전문 교육에서 어떠한 것들을 다루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강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문 특허 번역 교육의 실행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실제 특허 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 번역의 난이도나 요구되는 전문 지식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특허 번역 교육은 일회성의 특강 형식 보다는 특허 번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일정 기간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 번역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번역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여타의 다른 전문 번역 교육과 다르게 번역 실습을 수행하기에 앞서 특허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 지식과 실제 번역 텍스트에서 다루게 될 주요한 전문 기술지식 및 기술용어에 대한 수업을 전반부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실제 번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번역을 하는 배경 및 관련된 법률지식과 기술지식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지식 및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의 중후반부에서는 특허 번역 실습을 통한 번역 교육을 수행하도록 한다. 앞서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번역 실습 과정에서 영어 → 한국어, 한국어 → 영어의 양방향 모두 다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 및 필요를 고려하여 특정 방향의 번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사례인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면 수강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국어 → 영어 방향에 중점을 둔 번역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겠다. 특허 번역의 실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번역 실습에서 사용하는 번역 텍스트는 반드시 실제 번역이 이루어지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번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앞서 사례연구와 같이 특허 번역의 특성에 기반한 언어지식, 기술지식, 법률지식의 세 가지 대분류에 따라 번역 결과물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특허 번역의 특수성 및 특허 번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법률 번역의 일부로만 알려져 왔던 특허 번역에 대해 그 정의를 살펴보고 특허 번역이 왜 중요한지 및 특허 번역이 다른 분야의 번역과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4년 2학기에 진행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의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 중 일부로 진행된 특허 번역 수업을 분석함으로써 특허 번역의 특징이 실제로 번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례를 가지고 알아보았다. 수업 진행 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번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험을 조사하여 수강생들이 과제 수행 중 어떠한 면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특허 번역의 특수성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 가능한 특허 번역의 특성상 특허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번역사는 물론이고 업계 종사자들 역시 특허 번역이 다른 분야의 번역에 비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하지만 난이도나 중요성에 비해 실제 특허 번역의 품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 번역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식재산서비스 업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은 법률번역 전문가 과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강생들의 설문을 통해 전문 특허 번역 교육 프로그램은 특허 번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가 진행해야 하며, 그 내용이나 난이도 상 일회성의 특강 형식 강의보다는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과정 중 일부로 1회에 진행된 특허 번역 수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특정 학교에서 실시한 소수의 학생들, 특히 특수한 배경과 특정 니즈를 가지고 수강한 학생들의 번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특허 번역의 특수성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특허 번역에 대한 국내 연구가 기계번역을 제외한 관점에서는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체계적인 전문 특허 번역에 대한 강의나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현재 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특허 번역에 대해 조명하고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내뿐만 아

나라 타국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한 노력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노력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허 번역의 중요성은 지식재산업계를 필두로 충분히 인식되었으나, 그 품질을 향상하고 제대로 된 특허 번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 물론 실무 경력이 많은 전문 강사의 섭외 등 실질적인 문제가 많지만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이 주도하는 전문 특허 번역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특허 번역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박동식 (2009) 「특허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요약서에 대한 고찰 -미국, 유럽, 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34: 8-15.
- 신지선 (2009) 「법률텍스트 번역의 특성에 입각한 교육모델 제안」,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11(1): 63-80.
- 윤상원 (2014) 『실전으로 배우는 발명·특허』, 서울: 한빛아카데미.
- 이용훈, 이숙의, 류병래 (2005) 「한영자동번역에서의 ‘~ㄴ 것은’의 처리: 특허문서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10: 77-88.
- 최승권 (2007) 「영어 특허문서 자동번역을 위한 특허번역패턴 연구」, 『번역학 연구』 8(1): 301-322.
- 최승권, 권오욱, 이기영, 노윤희, 박상규 (2006) 「웹 영한 번역기로부터 특허 영한번역기의 특화 방법」,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10: 57-64.
- 최승권, 권오욱, 이기영, 노윤희, 박상규 (2007) 「도메인 특화 방법에 의한 영한 특허 자동 번역 시스템의 구축」, 『소프트웨어 및 응용』 34(2): 95-103.
- 최승권, 권오욱, 이기영, 노윤희, 박상규 (2012) 「패턴기반 영한 자동번역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도메인 특화 방법」, 『소프트웨어 및 응용』 39(4): 253-260.
- 특허청 (2008) 『지식재산권 영한용어사전』, 대전: 특허청.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12) 『지식재산의 이해』, 서울: 박문각.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0) 『지식재산 번역 가이드라인』, 대전: 특허청.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a) 『지식재산번역능력시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대전: 특허청.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1b)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초급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대전: 특허청.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연구』, 대전: 특허청.
- Aragonés Lumeras, Maite (2007) ‘Translating Patents: Translative Strategies’, *Proceedings of 48th ATA Annual Conference* 327-334.
- Aragonés Lumeras, Maite (2008) ‘Meaning: The Philosopher’s Stone of the Alchemist Translator?’, *Translation Journal* 12(3): 1-4.
- Aragonés Lumeras, Maite (2010) ‘How to Become a Patent Translator: Tricks and Tips – Notions of Text Genre and Ceremony to the Rescue’, *Meta: Translators’ Journal* 55(2): 212-236.
- Arinas Pellón, Ismael (2010) ‘How Does a Patent Move? Genre Analysis Has Something to Say about It’, in Maurizio G. and Christopher W. (eds) *Legal Discourse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Bern: Peter Lang, 313-334.
- Arinas Pellón, Ismael (2012) ‘How Vague Can Your Patent Be? Vagueness Strategies in U.S. Patents’, *Hermes –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Business* 48: 55-74.
- Arinas Pellón, Ismael and Carmen Sancho, Guinda (2010) ‘Descriptive Strategies in U.S. Patents’, *Reconceptualizing LSP – Online proceedings of the XVII European LSP Symposium 2009*.
- Bamberger, Fred H. (1962) ‘Translating in the U.S. Patent Offic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46(1): 33-36.
- Burk, Dan L., Reyman, Jessica (2014) ‘Patents as Genre: A Prospectus’, *Law & Literature* 26(2): 163-190.

- Cross, Martin (2007) 'Literal Translation of Patents', in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ed) *The Patent Translator's Handbook*,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19-28.
- Cross, Martin (2010a) 'Translation policies in patent practice', *Westlaw Journal* 13(24): 3-5.
- Cross, Martin (2010b) 'Translating Patents: Issues in Prosecution', *The New York Law Journal* 244(28): 1-2.
- Gooding, Gerry (2001) 'Free translation of Japanese patent documents on the web',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83: 151-154.
- Hartman, Nicholas (2007) 'An Introduction to Patent Translation', in American Translation Association (ed) *The Patent Translator's Handbook*,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11-18.
- IPO (2011) *PATENTS: Essential Reading*, Newpor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Lamberg, Jaana (2013) 'Genre Features of Patent Applica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elsinki.
- Leonard, Grace (1994) 'Patents and translation', *Journal of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76: 561-566.
- Meraw, Leonard (1993) 'Patent Claim Translation', in Wright, S. E. and Wright, Jr., L. D. (eds)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1-122.
- Tsai, Yvonne (2008a) 'Supply and Demand Analysis of Patent Translation', *Translation Journal* 12(3).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45patents.htm/> [cited 2015. 1. 10].
- Tsai, Yvonne (2008b) 'Professionalism in Patent Trans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Servic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lcalá de Henares, Spain.
- Tsai, Yvonne (2010) 'Text Analysis of Patent Abstracts', *The Journal of Specialized Translation* 13: 61-80.
- Vitek, Steve Vlasta (2001) 'The Changing World of Japanese Patent Translators', *Translation Journal* 5(2).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16japan.htm> [cited 2015. 1. 10].

Vitek, Steve Vlasta (2007) ‘Linguistic Problems with Translation of Japanese Patents to English’, *Translation Journal* 11(2).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40patents.htm> [cited 2015. 1. 10].

Vitek, Steve Vlasta (2011) ‘More Reflections of a Human Translator on Machine Translation in the Field of Patent Translation’, *Translation Journal* 15(3).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57mt.htm> [cited 2015. 1. 10].

WIPO (2012) *Guidelines for the Translation of PCT Application Abstract Korean to English*, Geneva: WIPO.

WIPO (2014)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Geneva: WIPO.

[전자문헌]

구글특허검색 <http://www.google.com/patents/>

과학백과사전 <http://www.scienceall.com/>

네이버 사전 <http://terms.naver.com/>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전자신문 (2014). “IP서비스협회, 지식재산(IP) 글로벌화의 첫걸음 ‘IP번역 공개 포럼’ 개최” <http://www.etnews.com/20140513000124/> [cited 2015. 1. 10].

Kondoudis, Michael E (2009) ‘Patent Abstracts, Common Problems With Them, And Tips For Drafting A Better Abstract’

<http://patentablydefined.com/2009/09/28/patent-abstracts-common-problems-with-them-and-tips-for-drafting-a-better-abstract/> [cited 2015. 1. 10].

[특허공보]

삼성전자주식회사 (2010)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10-2010-0034162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Frame/> [cited 2015. 1. 10].

삼성전자주식회사 (2005) 「하이브리드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입체 디스플레이

레이장치」 10-2005-0029599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Frame/> [cited 2015. 1. 10].

Apple Inc. (2009) 'Edge-lit backlight unit with thin profile.' US 8248554 B2
<https://www.google.co.kr/patents/US8248554?dq=edge-lit+backlight+unit+with+thin+profile&hl=ko&sa=X&ei=DTmyVILsNsaB8QXlhIDQBw&ved=0CBsQ6AEwAA/> [cited 2015. 1. 10].

Eternal Electronics Limited (2014) 'Dual sim card adapter for mobile device.'
US 20140274210 A1
<https://www.google.co.kr/patents/US20140274210?dq=Dual+sim+card+adapter+for+mobile+device&hl=en&sa=X&ei=mG6uVMjLIs388QXCwYHgAg&ved=0CB0Q6AEwAA/> [cited 2015. 1. 10].

[Abstract]

**The Need for the Korean-English Patent Translation Education:
A Case Study of the Legal Translation Specialist Certificate Program at
GSTI, Ewha Womans University**

Choi, Hyo-e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patent translation, a hybrid of legal translation and technical translation,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Korean-English translation education specialized in patent translation, based on the Legal Translation Specialist Certificate Program offered by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As an introduction to the genre of patent translation, the paper present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atent transla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patent translation. Despite the ever-increasing need for and the enormous significance of patent translation in patent application and litigation,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outputs is not good enough due to a severe lack of qualified translators. The characteristic of patent translation that requires a mix of source/target language proficiency, patent-related legal knowledge, and in-depth technical knowledge is regarded as a key reason for the not-so-good quality and the lack of qualified translators. Against this backdrop, the paper makes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patent abstract translation by students of the Legal Translation Specialist Certificate Program by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based on the three key factors required for patent translation — source/target language proficiency, patent-related legal knowledge, and in-depth technical knowledge. After the text analysis, the paper looks into a survey conducted after the class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students would have

experienced during carrying out the assignment as well as their perception on the translation education specialized in patent translation. Overall, most students felt patent translation difficult mainly because patent translation requires all the three factors of language proficiency, legal knowledge, and technical knowledge, agreeing with the need for th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is to emphasiz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atent translation and the need for the specialized translation education program.

▶ Key Words: patent translation, IP translati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translation, technical translation, translator training, specialized translation education

최효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cutedinojr@naver.com

관심분야: 특허번역, 기술번역, 기계번역,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5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9일